

## 재공고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(2026. 3. 12.)

변경 사항	기존 공고문 (26. 3. 11.)	변경 공고문 (26. 3. 12.)
행정 5급 (행정(보훈)) 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</li> <li>■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li> <li>■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li> <li>■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/li> <li>■ 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</li> <li>■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대구지방보훈청 추천을 받은 자</li> </ul>
공무 4급 (보안(보훈, 장애)) 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</li> <li>■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li> <li>■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li> <li>■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/li> <li>■ 「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</li> <li>■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■ 「경비업법」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대구지방보훈청 추천을 받은 자</li> <li>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■ 「경비업법」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</li> </ul>
장애인 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9호서식]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</li> </ul>